

부산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54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5464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491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김봉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박아현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박종현, 이재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민경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1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4917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5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4행의 “2020. 12. 19.”을 “2020. 8. 19.”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F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① 피고 B를 상대로는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C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기존 어음 발행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음 발행으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는데 여전히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고,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원고 전부 승소)’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관련

1) 피고들 주장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채권양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당심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나)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권을 양도한 시점은 2020. 4. 21.이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시점은 2020. 8. 7.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0. 9. 9.과 시간적으로 다소 근접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권을 양도한 F의 행위는 실질적인 채권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원고와 F은 플라스틱 화합물 유통거래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동종업계의 거래처 관계이다.
- ②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됨에 따라, F은 2020. 4. 21.경 물품대금 변제약정(갑 제3호증의 1, 2)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변제를 약속하면서, 아울러 위 변제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③ 위 채권양도 무렵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719,772,950원 상당으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채무를 훨씬 상회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1)
- ④ F은 위 변제이행이 끝내 어렵게 되자 2020. 8.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2020. 8. 7.은 F에 1차 부도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의 양도는 오히려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들은 F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절한 본안전항변이 될 수 없다.
- 라) 또한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와 F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②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채권액에서 그동안 피고 B가 변제한 금액이 제대로 공제되지 아니하여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채권양도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위 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반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② 주장 역시 피고 B가 F에 새로운 어음에 해당하는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항변 관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르면, 각 어음 액면금의 변제기는 “각 어음 만기일”로 특정되어 있고, 각

어음은 개별적으로 발행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각 어음마다 별도로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어음의 발행을 단순히 기존 어음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 채무의 성립으로서 위 차용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 B가 종래 이 사건 차용증에 포함되었던 기존 어음의 액면금 상당 채무를 F에 전부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당심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²⁾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피고 B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구두 또는 묵시적 소비대차계약을 맺어오다가 2019. 12. 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합하였던 점, ② 그러면서도 그 차용금액만 총액의 형태로 명시하였을 뿐 개별 어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F이 피고 B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어음의 만기 무렵까지 어음금액 상당을 확보하여 부도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점, ④ 그리하여 피고 B에게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만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한편 그 할인금으로 기존 어음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을 놓고 보더라도, 위 차용증에는 ‘각 어음 만기일 기준 차용하였으며’, ‘각 어음 만기일 15일 후까지 변제하기로 함’과 같이 ‘각 어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위 ‘각 어음’의 범위에서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발행된 어음은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어음 발행으로 인한 채무 역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채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가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L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B가 기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F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차용금이 629,200,000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F 측이 계속 보관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F과 피고 B의 어음할인 공모관계

(1) 피고 주장

F과 피고 B는 서로 공모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관계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B가 그 작성일인 2019. 12. 9.경까지 F로부터 발행받은 후 융통하여 할인받은 할인금 전액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는 F이 피고 B로부터 건네받아 독자적으로 사용한 할인금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 B에게 단독으로 변제책임이 귀속되는 금액만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B를 상대로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당심 판단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처럼 F이 피고 B의 융통어음 할인행위에 공모하고 피고 B가 할인받아 온 할인금을 F과 피고 B가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를 F로, ‘채무자’를 피고 B 자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순순히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융통어음의 사용자는 전적으로 피고 B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의 선의

(1) 피고 주장

피고 C은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어머니인 BL을 통하여 피고 B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내용이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당심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에게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를 대신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금전거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한 BL은 2019년경부터 피고 B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왔으므로 피고 B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 B가 BL 일가(一家)로부터 높은 이율로 빌린 합계 228,5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그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L은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피고 B가 M저축은행에 대하여 4억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1~2일 사이에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등기이전 등이 전부 완료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최희영, 판사 추경준

별지

1) 갑 제76호증[거래처원장(원고-F)] 1면 참조

2) 특히, F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과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H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고 C의 2022. 9. 26.자 항소이유서 9면 참조